2019. 12 Vol.5

R&B Report

조세 Special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DR & AJ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P&B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SAMPLE

P&B Report 구성 소개

주요 구성

상정 법률안 목록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별첨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SAMPLE

Contents

조세 special은
2019.11.1부터 11.30까지
상정된 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Ⅰ. 소위원회

06 **1. 상정 법률안 목록**

07 **2. 주요 법률안 소개**

기획재정위원회

07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법률안 비교·분석

4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SAMPLE

B&B Report

조세 special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3. 법률안 비교 · 분석

SAMPLE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세청법안
		11.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사회복지세법안
	○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2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아동수당세법안
		2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33. 청년세법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SAMPLE

기획재정위원회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번호 2024119
제 안 자 기획재정위원장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19.11.29.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본회의
2019.12.01. 본회의 자동부의(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

제안이유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며, 조세불복절차에서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고, 수출입 중소기업 ·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하며,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매자로부터 관세를 선납 받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관세를 일부만 납부하여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함(안 제19조제5항 제1호다목 신설 및 제270조제1항).

나.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현행 제41조 삭제 및 안 제42조).

다. 납세의무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가산세의 감면 사유와 감면액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함(안 제42조의2 신설).

라. 보석산업의 활성화 및 세원양성화를 위해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안 제93조제18호 신설).

마.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안 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장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관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의4 신설).

사.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6조의5 신설).

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의 보완

i)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등을 허용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18조제6항).

ii) 청구인이 불복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을 제출하여 보정하거나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보정사항을 구술하고 이를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23조제2항 신설).

iii)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25조).

iv)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128조의2 신설 및 안 제132조제4항).

v)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9조의2 신설).

자.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직위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청 및 절차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함(안 제118조의2, 제118조의3, 제118조의4, 제118조의5, 제330조제8호라목 신설 및 안 제110조제2항, 제114조의2제4항).

차.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세사 자격제도를 보완하되, 면제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험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함(안 제165조).

카. 수출입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3조제3항 단서 및 제329조제6항 신설).

타.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임을 법률에 규정하여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안 제176조의2제4항).

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여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6조제1항).

하.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인도된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6조의2 신설 및 안 제277조제4항제2호).

거.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2조제1항제7호 신설).

너.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수출·수입·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안 제246조의2제1항).

더.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46조의3).

러.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47조제3항).

머. 오픈마켓을 통한 가짜상품 등의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관세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 위반 물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함(안 제266조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버.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안 제2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서.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의 시작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및 송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4조의2 신설)어.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부대의견

가. 관세청은 납세자보호관과 담당관의 독립성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인력증원은 최소화하는 한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방안, 인력증원 추진계획 및 현황 등을 2020년 상반기 내에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정부는 **관세법 하위법령(시행규칙 등) 개정시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실제 발생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관세법 개정의 효과가 감안될 수 있도록 입법 취지에 유의할 것.**

대안반영폐기 법률안(17건)

- [20042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 [20049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 [20164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 [20154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인)
- [20182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 [20211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20209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 [20222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25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 [20229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1인)
- [20229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3인)
- [20230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 [20223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의원 등 12인)
- [20224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 [20220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 [20231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3인)

주요발언

쟁점1.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신설

심재철 위원(자유한국당)



이게 보니까 중소·중견기업만 컨테이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기업은 안 한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 차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별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게 아닐까요? 원래는 화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지금 수출입이 중소·중견들 어려우니까 이쪽을 좀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도와주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수출입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려면, **할 때는 아예 다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이게 사실 예산 같은 경우에 대기업까지 해도 한 5억 원만 더 추가되는데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대기업이 검사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검사 대상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들은 대체로 낮습니다.** 3%입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해서 검사하는 게 보통 중소·중견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제외했습니다.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이것도 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하나로 사실은 미세하지만 정책을 선택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기업으로 열어 버리면, 물론 비용이 얼마 안 돼요. 예산 추계를 해서 전체 포함하더라도 100억 미만이 되지만 이렇게 조문화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법안을 발의한 개념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수출입화물의 검사비용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항목 중의 작은 한 부분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또 대기업까지 열어 버리면 다른 조항에 있어서도 이렇게 슬금슬금 다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원안이나 정부 원안에서 추가해서 이춘석 의원안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서 그냥 **중소·중견으로 가서 처리해 주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화주에 일반기업 다 빼 버리면, 대기업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다른 조항에 이런 세세한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유승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검사를 국가가 말하자면 선별적으로 집어서 하는데 그런데 화주가 이것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화주 입장에서 보면 반발을 할 수가 있지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검사를 당하고 검사비용까지 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떤 데는……

그런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까지 포괄해서 이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단 **거기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인데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저는 국가가 검사의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번호 2024120
제 안 자 기획재정위원장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19.11.29.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11.30. 회부

본회의
2019.12.01. 본회의 자동부의(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

제안이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며,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종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로서 소액의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안 제13조제8항 신설)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봄(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

i)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안 제21조제2항제11호)

가산세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나누어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각각 규정함.

ii)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세액 자동확정 근거 신설(안 제22조제4항제5호 신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대상에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함.

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안 제26조의2제5항)

명의신탁 등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함.

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등을 법률에 상향입법(안 제27조 및 제47조의2)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및 무신고 가산세 금액 계산시 필요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

i)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안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ii) 경정청구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45조의2제4항)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를 허용함.

iii)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안 제45조의2제4항 후단)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함(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사.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안 제47조의5제1항, 제4항 및 제5항)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는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할 때까지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산세 한도를 조정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아.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확보

i)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 인상(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

역외거래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ii)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적용범위 확대(안 제81조의8제3항)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안 제48조제2항)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함.

차.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i)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심판청구인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함.

ii)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안 제64조)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iii)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안 제78조제2항)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대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

iv)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안 제81조의12제2항 및 제3항 신설)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까지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카.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안 제85조의6제7항 신설)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세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타.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i) 신고기한 등에 대한 용어 정비(안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제1항)

"신고기한일"·"납부기한일"을 "신고기한 만료일"·"납부기한 만료일"로, "통신날짜도장"을 "우편날짜도장"으로, "우송일수"를 "배송일수"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함.

ii)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안 제26조의2 및 제35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규정, 예외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국세보다 우선하는 항목과 그에 따른 법정기일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iii)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안 제53조제2항 신설)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와 제3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환급하기 전에 먼저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파.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안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 개통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를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인 2022년 2월 3일까지 유예함.

부대의견

가. 국회는 제13조제8항 신설이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하는 세제 지원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부는 공익목적 수행,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다른 유사한 법인에 대해 동 사례를 근거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세제지원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나. 정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금리수준 및 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

대안반영폐기 법률안(17건)

- [20042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 [20049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 [20164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 [20154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인)
- [20182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 [20211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20209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 [20222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25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 [20229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1인)
- [20229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3인)
- [20230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 [20223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의원 등 12인)
- [20224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 [20220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 [20231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3인)

주요발언

쟁점1. 국세청 과세정보의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부분

권성동 위원(자유한국당)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세정보 제공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세기본법상 제81조의13에 보면 과세정보 비밀 유지, 비밀주의를 우리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죽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서 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쟁송이 있을 경우에 법원의 요청이나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이걸 주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통계 목적으로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공하는 것은 그런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1조의13의 전체적인 취지에 맞지가 않는다,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만한 권한을 다 줬어요. **조사 권한을 다 줬고 또 서류 제출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밝혀내야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비밀주의 원칙이 무너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강병원 위원(더불어민주당)



제가 법안을 낸 것의 전제는 이겁니다. 과연 그렇게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혹은 그런 계열사 내에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을 공정위가 어느 단계까지 파헤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봐서는 아까 권성동 위원님께서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공정위가 갖고 있는 행정력으로 모든 구체적인 돈의 흐름이라든지 여기까지 파헤치는 데 저는 공정위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뭔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려고 하면 과세비밀주의에 갇혀서 더 이상 수사 진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평범하게 잘살고 세금 잘 내는 개인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특수관계인들 간에 뭔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하고 들어가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입증하기 힘든 부분에 관해서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과세 자료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과세비밀주의를 지키면서도 이런 불법하거나 부당한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개정안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이해하다시피 현행 규정은 지자체가 조세 부과·징수를 위해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지자체 외의 정부기관을 추가하고 과징금을 추가해서 공정위라든가 다른 부처 기관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과세 자료가 있으면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부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굉장한 기초 자료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같은 행위가 있을 때 그 자료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병원 의원님 안하고 채이배 의원님 안은 정부안을 채택하게 되면 그 취지가 달성되면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법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번호 2024112
제 안 자 기획재정위원장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19.11.29.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11.30. 회부

본회의
2019.12.01. 본회의 자동부의(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
2019.12.10. 원안가결

제안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는 한편,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손금·익금 산입제도의 합리화

i)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안 제18조제6호)

국고보조금이 기업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ii)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안 제24조)

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iii)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안 제27조의2제1항)

사적(私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함.

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초과" 에서 "이상" 으로 변경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다.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30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10에서 1만분의 20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25조).

라. 합병·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명확화(안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의4제5항 신설)

합병·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마. 가산세 제도의 조정

i)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안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

ii)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 완화(안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i)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관련(안 제93조제8호)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ii) 국내원천 기타소득 관련(안 제93조제10호차목 신설, 안 제98조제1항제8호)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함.

사.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i)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 일원화(안 제98조의4제4항 단서, 제98조의5제2항 단서 및 제98조의6제4항 단서 신설)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ii)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 확대(안 제98조의6제4항 본문)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

부대의견

가. 국회는 제13조제8항 신설이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하는 세제 지원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부는 공익목적 수행,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다른 유사한 법인에 대해 동 사례를 근거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세제지원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나. 정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금리수준 및 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

대안반영폐기 법률안(7건)

- [20066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 [201383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 [20162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 [201817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1인)
- [20191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 [20211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 [20235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등 11인)

주요발언

쟁점1. 법인세율 인하

추경호 위원(자유한국당)



당연히 인하를 해야지요. 지금 이렇게 기업이 힘들어 하고 경기가 좋지 않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이럴 때,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흐름과는 거꾸로 인상한 아주 독특한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법인세는 지금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다른 얘기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기업의 소위 말하는 조세 국제경쟁력인데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과거 정부부터 내려왔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내리고 싶어서 내렸다기보다는 세계 주요 경쟁국들이 내리니까 우리도 같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같이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근자에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또 한 구간 더 신설해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기업 활력을 돋우고 경제를 살리고 경기를 좀 북돋기 위해서도 법인세는 내려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 법인세 구간은 단순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두 구간을 초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두 구간 했고, 또 중소기업도 **현재 10%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이익을 내는 곳에서는 그것도 8%로 내리고 거기에 따른 최저한세율도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발의를 한 겁니다.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



실제로는 법인세율 3000억 초과에 관해서 신설했지만 결론적으로 실효세율 측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문제 관련해서 각 의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특히 이언주 의원 발의안을 보면 1조 이상 32%, 5000억 초과 29%, 2000억 이상 26% 이렇게 증세안으로 올렸고 나머지는 감세안이 있어서 **현재 경제의 국면에서 증세와 감세의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어서 현행 유지하는 게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자유한국당)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촉진시켜야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들은,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날로 하락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 때문에 해외에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왜 글로벌 스탠더

드를 안 쫓아가고, 특히 법인세는 국제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기업들은 세금이 낮은 곳으로 계속 옮겨 갑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율은 인하를 해야 된다.**

유승희 위원(더불어민주당)



마치 아주 단순화하라는 게 두 개 구간이었는데 갑자기 4개 구간이나 바꾼 것처럼 얘기하는데 박근혜정부 때도 3개 구간이었고 그다음에 이 구간이 최고 3000억 원 초과의 구간에서 과표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법인세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의 실효세율이 몇 %예요? 지금 현재 법인세가 25%라고 했을 경우에 …… 18.5인데 이것도 **지금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R&D 혜택도 대기업이 많이 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시 특례조항도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대기업이에요.** 재벌 기업이라고……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너무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니까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고** 봐요. 자꾸 바꾸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심재철 위원(자유한국당)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데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지금 그 두 가지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탈한국, 한국을 떠나는 이유들이 법인세에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그러는데 법인세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이동, 가동성들이, 모빌리티(mobility)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국제 비교에 따라서 유리한 데로 다 뽑아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죽고 소주성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이미 뻔히 다 입증이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그래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것은 법인세를 좀 낮추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추경호 간사께서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낮추자라는 것인데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림 위원(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것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에 돈이 많이 남아 있도록 하고 정부는 덜 거두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경제학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 정부의 어느 대통령도 법인세를 내리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전부 법인세를 미국이나 일본 할 것 없이 경기 살리기 위해서는 낮추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데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소위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강병원 위원(더불어민주당)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다 그래 가지고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경제성장이 된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장률도 떨어져 왔던 게 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더라도 법인세 인하라는 것과 성장률의 관계라는 것이 법인세를 인하한 만큼 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쟁점2. 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명확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합병을 하게 되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A라는 법인하고 B라는 법인이 합병을 해 가지고 C가 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때 A법인의 이월결손금이 C라는 법인에 합쳐 가지고 B법인에서 승계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가 되면 안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조세 회피를 하기 때문에 각각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합병해서 C라는 법인이 되더라도 A라는 법인의 사업과 B라는 법인의 사업소득을 구분해 가지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 그저께인가 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이월결손금이 있게 되면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10년 이내 이월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때 그 당해 연도 소득의 60% 이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치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합병 후에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과 합병법인의 사업이 각각 계속 존재하면서 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에 종전, 그러니까 A·B 합병됐을 때 A 부분의 사업소득에서는 A부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데 A 부분의 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연도 소득의 60%, 그러니까 당해 소득의 60% 내에서 공제한다라는 것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쟁점3.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 배병관



소득세법에서 논의되었던 사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례 가정입니다. 첫 번째는 A, B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두 번째는 A 부문은 매년 손실이 100씩 발생을 합니다. B 사업부문은 매년 이익이 300씩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로부터 매년 A 부문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 100을 수령받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이 공공기관은 결손금 공제 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 1000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행은 국가사업손실 발생에 따른 보조금 수령시 법인세 변화입니다. A 부문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보조금을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 보전으로 충당 처리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는 총 소득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손보전 안 한다라는 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A 사업부문에서 소득액이 100씩 결손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B 사업부문에서 소득금액은 300씩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결손보전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100, 100 해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총 소득금액은 14년부터 18년까지 계속 매년 300씩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세율이 곱해져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결손보전을 하는 경우에 A 사업부문 소득금액도 같고 B 사업부문 소득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손보전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결손보전이라는 것은 공제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 1000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한다라는 의미로 결손보전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법상에서 익금불산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익금불산입을 하게 되면 보조금 받은 것을 익금으로 안 보기 때문에 00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소득금액은 14년부터 18년까지 200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보전으로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취지는 보조금 수령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으로 충당 처리하는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을 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되면 위의 표에서 결손보전을 안 한 경우와 똑같이 익금산입 됩니다. 그래서 개정 취지는 첫 번째는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점, 원래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취지는 대주주가 기업이 결손

이 나면 자기 자산을 팔든지 아니면 자기 돈으로 결손을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을 과세되지 않도록 대주주가 결손보전 하는, 일반 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제도와는 좀 무관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용 자산을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 원래 내용 연수가 있는 사업용 자산은 매년 그 내용 연수만큼 손금 처리가 가능한데 저희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100억을 그대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 즉시 손금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도 있고요.

세 번째는 손실이 발생하는 공익사업 수행 시 익금과 손금이 상계됨에도, 예를 들어서 A 사업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거기에 보조금 수령을 100씩 받아서 그 사업부문에서만 보면 사실은 과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음에도 B 사업부의 소득금액이 나는 게 있고 과거에 발생했던 이월결손금을 충당하는 처리를 하면 사실상 B 사업부문은 소득금액에서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중지원 소지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기에 대해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부칙 조항으로 바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부분도 저희가 넣어서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자유한국당)



산입을 해서 A, B를 짬뽕을 해서 통합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봐야지 A 따로 B 따로 해 가지고 각각 손해난 부분을 매워 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입을 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윤후덕 위원(더불어민주당)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



동의합니다.

쟁점4.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



동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 측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까지, 정부나 과세 당국에서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 조항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비거주자가 이의가 있거나 경정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자료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들이 소명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당국이 그 문제에 관해서 소명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과세 당국이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비를 해 줘서 당사자가 그것을 입증해서, 경정청구나 과오납에 관한 부분들을 본인이 입증해서 받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단순 과오납의 경우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는 소송을 하라는 건데, **소송 이전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과오납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위원회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번호 2024114
제 안 자 기획재정위원장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19.11.29.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원회
2019.11.30. 회부

본회의
2019.12.01. 본회의 자동부의(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

제안이유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매매 시 납세의무자 규정의 보완(안 제10조제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나.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안 제39조제1항제2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

다.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42조제1항)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

라.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기한 보완(안 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적용(안 제48조)

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합리화

i)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안 제60조제2항제2호)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ii) 가산세 산정기준으로서의 공급가액 명시(안 제60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됨을 명확히 함.

iii) 가산세 중복 적용 제외 범위 명확화(안 제60조제9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사. 지방소비세 배분비율 상향 조정(안 제72조제1항)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대응 장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대안반영폐기 법률안(13건)

- [20010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21인)
- [20129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 [20160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20190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 [2021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20205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5인)
- [20199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1인)
- [20220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 [20220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20226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 [20222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 [20237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 [20222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요발언

쟁점1. 수탁자가 재개발사업 등의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한 재화의 공급 규정 보완

추경호 위원(자유한국당)



일응 징세 당국이나 조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왜 그 책임을 그쪽의 분쟁으로 두느냐. 예를 들어 한남동에 있는 사람을 한남동 그것을 추적해서 거기서 완결을 지어 줘야 되지 다른 쪽의 동네에 재산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것은 일단 우리는 모르겠고 신탁회사 너네가 해결해, **조세 당국하고는 신탁회사가 우리 둘이 해결하고 나머지 문제는 또 그 안에서 서로 법적 분쟁이나 등을 통해서 해결해라 그러면 그것은 조세행정 차원에서 너무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다.**

기왕에 이것을 예외적으로 도입을 하면 거기에 관해서 엄격히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신탁법의 신탁재산도 그렇게 사업, 재산별로 구분해서 주체별로 구분해서 계리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으면 과세 납세의무도 그렇게 추적해서 하도록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걸 **명확히 여기서 바꿔 줘야 된다.**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



제가 보기엔 이렇게 이 제도로 정비를 하게 되면 사업, 그러니까 도정법에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의 기간이 단축되겠네요. 그러니까 수탁 1인이 전체 위탁되는 수백, 수천 명의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고 이후 책임에 있어서 수탁자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체계를 좀 단순화하고 과세행정의 애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SAMPLE

기획재정위원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회

의안번호 2024121
제 안 자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19.11.29.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원원회
2019.11.30. 회부

본회의
2019.12.01. 본회의 자동부의(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

제안이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안 제4조의2제5항)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함.

나.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i)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기간 단축 및 기준 완화(안 제18조제6항)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퍼센트에서 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퍼센트로 변경하며, 고용유지의무 이행시 현행 정규직근로자 인원 기준 외 총급여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ii)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안 제18조제10항 신설)

가업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사이에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함에 따라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함.

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 일괄공제 선택 허용(안 제21조제1항)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안 제23조의2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현행 상속주택가격의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낮춤.

마.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안 제30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제세액 계산방식을 정비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함.

바.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안 제43조제2항)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안 제45조의2제4항)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 주식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상 소유권 이전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함.

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안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함.

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안 제48조제2항)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

차.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

i)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안 제50조제3항제1호)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ii)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안 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50조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고,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함.

iii)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 확대(안 제50조의3제1항 및 제78조제11항)

종전에는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iv) 의무공시 결산서류 보완(안 제50조의3제1항제1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를 확대함.

카.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안 제52조의2)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안 제63조제3항)

종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함.

파.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71조제2항제1호)

기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과세관청과 협력하여 비거주자 규정을 통한 증여세 회피 가능성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

나. 기획재정부는 **최대주주등의 주식등 상속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 가치 평가 및 할증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적 과세동향 등을 토대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20년 8월 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대안반영폐기 법률안(18건)

- [20028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6인)
- [2011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
- [20154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 [20188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 [20189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 [20190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20206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4인)
- [20192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의원 등 10인)
- [20195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 [20197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1인)
- [20205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3인)

SAMPLE

- [20206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20200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등 10인)
- [202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2인)
- [20192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 [2022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27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의원 등 10인)
- [2022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1인)

주요발언

쟁점1. 가업상속공제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 및 공제율 • 공제한도 조정 등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가업상속공제의 높은 혜택 수준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기보다 이번에 크게 제도가 보완된 연부연납 특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기본적으로는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는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인하하되, 사후관리요건은 완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법안의 취지입니다.

권성동 위원(자유한국당)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OECD에서 2등이라고 했는데, OECD 1위 국가에요. ……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과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돈을 버는 것은 자기가 축적한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기본적으로 자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나 경영자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그런 점에 비춰 봤을 때는 우리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가업상속도 이러다 보니까, 중견기업도 그 한도를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안 가는 거예요.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매출액을 늘리고 싶은데 요건이 안 되니까…… 나는 정부가 여러 가지 세수도 고려해야 되지만 정말 중소기업을 키워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특히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과 다른 특단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자유한국당)



지금 가업상속을 좀 촉진시켜서 대한민국도 100년 브랜드기업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부분들을 부의 대물림으로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국제무대에서 존속할 수 있는 히든챔피언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속 범위를 조금 높이고 공제율이랄지 공제한도들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윤후덕 위원(더불어민주당)



연부연납은 어차피 내는 것 잘라서 나중에 내게 해 주는 거니까 그건 큰 도움은 아니고요…… 정부가 너무 완강하게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주식이 넘어가는 게 경영을 넘기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가업상속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넘겼다고 그게 경영을 넘긴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식이 넘어가서 그 기업이 존속하고 존속가치가 높아지고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술자들이 계속해서 그 회사에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경영은 또 다른 문제예요. 경영은 또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전문경영인을 모셔서 경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정부로서는 조심스럽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매출 금액을 3000억으로 해 놓은 것을 5000억까지는 늘려야 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추경호 위원(자유한국당)



이제는 상속세에 관한 인식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특히 다 전면적으로 인식 전환해서, 세제개편은 안 되지만 기업에 관해서는 우리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을 승계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식을 달리하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는 현재 100대 기업 중에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지 않고 새로 창업해서 100대 기업에 들어간 회사가 제가 보기엔 5%도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가 지속적인 부의 대물림을 통해서, 경제의 전체적인 생태계 자체가 아주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화되어서 정말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 도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커 나가고 그러면서 경제 생태계에 진입하고 최상위 기업으로 올라가는 이 경제의 생태계 자체가 현재 아주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 기업상속이라는 부분들도 저는 큰 우리 기업이 어떻게 커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생성이 되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정신이 사실은 약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상속을 받고 이렇게 다 받은 사람들이 현재 모든 체제 내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텔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의 도전들을 막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업상속의 3000억 기준은 저는 적정하다,** 우리 기업 규모로 봐도 그렇고.

유성엽 위원(무소속)



제 생각에는 기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 내지는 확대 요청도 많이 있고 또 저도 일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좀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피상속인 경영 요건 등은 좀 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인데 하도 다양한 의견들이 막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건

김광림 위원(자유한국당)



꼭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국내만 보지 **말고 우리 중견기업들이 해외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국내에서도 상당히 크지만 세계 전체를 놓고 일본하고 경쟁한다, 독일하고 경쟁한다 보면 정말로 작은 기업이다 하는 포인트 하나,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가 제일 잘되어 있는 데가 독일인데 독일은 가업상속 받는 회사를 '저 회사'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 그런다고요. 투명하게만 관리하면 그 재산 자체가 우리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좀 하셔서 생각이 앞선 윤후덕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2.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요건 완화

유승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가업의 상속공제 관련해서 사후관리 요건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걸 좀 약간 완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후관리기간이 지금 10년인데 7년으로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처분가능 자산 규모도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그리고 연도별 고용유지의무도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80% 이상에서 70%로 그리고 사후관리기간 전체 고용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낸 안에는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100%에서 80%, 물론 중견기업은 100%를 유지하되, 이런 안 정도로 지금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납부가 어려울 적에 납부유예 제도도 있고 그렇듯이 **사후관리 제도를 좀 더 완화해서 어쨌든 가업상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자유한국당)



자산처분 기준이 현재는 20%인데 20%는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상속세 낼 돈이 없어 가지고 기업을 팔아 가지고 다시 또 내야 되는, 이래 가지고 지금 상속이 안 되는**…… 아까도 제가 농우바이오 얘기했지만 반찬 그릇으로 많이 쓰는 락앤락, 플라스틱 그릇들 가정에서 많이 쓰는데 락앤락도 결국은 가업 승계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 부분도 **저는 지금 50%까지 했는데 50%가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좀 더 적더라도 이 부분들도 충분히 늘려 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추경호 위원(자유한국당)



현장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터 줘야 기업들이 움직이지 이런 것 다 틀어막고 정부가 해 주고 싶은 것 해 줘 가지고 투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쟁점3. 탈세 • 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유승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징역·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해야지요. 까지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해야지요. 상벌 기준에도 부합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자유한국당)



공제를 받은 뒤에 범죄를 저지르면 그걸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사전행위까지, 상속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상속할 때 공제를 하지 마라, 혜택을 보지 마라, 이건 조금 심한 것 아닌가?** 받고 나서 문제가 된다면 그거야 규제할 수가 있겠지만 하기 전 상황까지 하는 건 좀 심한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상속세에 대한 특례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그 대상을 성실경영자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형벌에 따른 적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세법상에 가업상속, 이 혜택과 연계하는 것이 부당결부냐, 부당결부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이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정부 판단은 물론 적정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이 제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례제도이기 때문에 성실경영자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서 그렇게 정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광림 위원(자유한국당)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하고 유죄 확정판결하고는, 유죄 확정판결은 거기에 대해서 또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하는 것은 나는 반대입니다.** 이벌백계가 되든지……

권성동 위원(자유한국당)



가업상속공제 받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특혜기는 특혜지요, 어떻게 보면. 탈세라든가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업상속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한번 봅시다……그러니까 **벌금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거잖아. 그것 갖고도 이렇게 하면 좀 가혹하니까 여기를 집행유예 이상으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회계부정이라는 게 법률용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법률용어도 아니고 회계학상의 용어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게 회계부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건 법문에 집어넣어요. 이것을 시행령에 하지 말고 법문에 집어넣어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것, 어떤 것 위반했을 때 내가 상속세 감면받은 것 다시 토해 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법을 보면 딱 알 수 있게끔 해야지 법 찾고 또 시행령 찾고…… 이게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이잖아요.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이면 그걸 시행령에 자꾸 위임하면 안 되고 법률에 집어넣어야 돼요.**

쟁점4.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완화

심재철 위원(자유한국당)



어차피 지금 우리도 전체 기업들을 상속공제해서 잘 유지해서 장수 기업들, 백년 기업들을 키워 내야 된다고 보면 아예 폐지를 하든지 30에서 20%로 인하하는데 더 낮춰서 10%로 확 낮추든지 그렇게 해서 촉진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30%에서 20%로 나왔는데 제가 10% 정도로 낮추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30% 경우에는 5×3=15 해서 65%가 나오는 거고 20% 하더라도 상속세가 60%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아까 저는 10%라고 얘기했는데 10%가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왜냐하면 **상속세 자체가 50%로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증을 또 10% 붙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5%가 더 추가되어서 결국은 55%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위원(자유한국당)



아마 상장된 대기업 중에 이렇게 지분율을 높이,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50% 넘는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기업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소기업만 보호를 해 줘야 되고 중소기업만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중견기업이 훨씬 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에서 어떤 혁신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경영합리화를 해 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창출하거나 이래야 이게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면세를 해 주고 그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되는 중견기업은 이것을 안 해 준다 그러니까…… 중견기업 하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대기업으로 올라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 더 열심히 해서 대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30% 하면 6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최고예요, 두 번째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상속세율 자체도 최고고 65%도 최고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업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부가 착취하는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 내면.** 아니, 이것 과도하잖아요. 이게 과도하지 않아요, 65%가? 한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것 폐지하자는 거예요. 상속세를 낮추든가 아니면 할증률을 낮춰 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물론 정부가 20%로 낮춘 것은 진일보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내가 정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거예요.

유승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이것을 특례조항에서 본안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특례조항이 아닌 법안으로 정착을 시키는 것으로 하는 건데 **저는 정부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합리적인 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대기업의 경우는 당연히 50% 넘는 기업이 없지요. 다 상장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 넘고 있고 지분율이 외국인이 많아서 적지요. 그리고 중견기업은 그에 반해서 50% 이상이 많은 경향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오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제로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지분율 10%도 되지 않는, 한 5%도 되지 않는 그런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전체의 지배주주로서 역할을 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광림 위원(자유한국당)



결론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이것은 할증제를 좀 기업이 유리하도록 정부가 일부를 인정하는 건데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은 할증제 폐지하라는 거였어요, 수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정부안하고 추경호 안, 송언석 안을 고려해서 논의해야 되고.

쟁점5. 상증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대상 기업이 매출액 3000억 미만 가업상속과 지금까지는 연계되어 있었는데요. 그 제한을 푸니까 먼저 대상 기업이 전체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피상속인 요건으로 지금까지는 피상속인 경영 지분 보유기간이 10년이었는데 그걸 5년으로 단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상속인 요건은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심재철 위원(자유한국당)



어차피 세금 액수가 많을 텐데, 대기업이라고 보유 현금이 많아 가지고 여유 있어서 뭉텅이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러면 중소나 중견이나 마찬가지로…… **연부연납은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같이 적용해 줘 가지고 기업들이 승계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유승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연부연납제도에 대한 것은 사실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편으로는 풀어 주는 것은 필요한데 가업상속공제가 되는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좀 리지드(rigid)하게, 그러니까 중견기업 범위를 축소하고 연 매출액도 2000억 미만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을 단축한다든지 이렇게 연부연납제도를 좀 더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풀어 주는 부분이 그렇게 있는데요. **한없이 풀어줄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적용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고, 매출액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형성이랄까 그런 것들은 좀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부연납제도에 대해서 적용대상 기업을 늘리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 상황에서 연부연납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추경호 위원(자유한국당)



그러면 이게 논리가 안 맞는다. 연부연납제도라는 게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연부연납제도가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우리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논리가 뭐냐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할 이유가 없으면 규모별로 차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기획재정위원회

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번호 2024118
제 안 자 기획재정위원장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19.11.29.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11.30. 회부

본회의
2019.12.01. 본회의 자동부의(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
2019.12.10. 본회의 수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안 외 8건)

제안이유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증류주류 등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며,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제조관리사 제도 폐지(안 제19조·제54조제4호 삭제 및 제55조제1항)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나.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안 제21조 및 제22조)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되,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도록 하며,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함.

다. 주류의 범위 확대 및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 추가(안 제3조제1호다목·제6조제6항제3호 신설)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순 조작만으로 발효되어 주류가 되는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음식점·주점에서 별도의 주류 제조면허 없이 키트를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함.

대안반영폐기 법률안(4건)

- [201327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20163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202220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389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주요발언

쟁점1.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정부는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부터 우선 종량세 전환**하는 거고, 업계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타 주종들은 이번에 맥주, 탁주 전환 효과나 음주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 여러 측면을 보아 가면서 향후에 업계와 소통하면서 충분히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자유한국당)



저도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정부안에 동의를 하고 맥주업계의 고용 증대 그다음에 외산 맥주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개편하는 것은 시급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림 위원(자유한국당)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생산이냐 해외 생산이냐 이것을 떠나서 이렇게 되면 특정 회사의 주식 자체가 100% 외국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고용이나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오히려 회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량해고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AMPLE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종량제로 바꾸면 가격을 내려서 소비자 만족을 크게 해 준다고 했는데 이 해당되는 업체가 오히려 그 직전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나서 수요가 떨어지니까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또 그러면서 원매자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원매자 찾으면서 거의 성사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의 값만 올려 주는 것이 아닌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WTO 체제하에서 국내 생산이나 해외 생산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국내의 주주들이 이익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용을 따져 봤는데 고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체제 자체를 종가에서 종량으로 바꾸는 의미가 뭔지 하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지금 정부가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맥주와 탁주고요. 맥주의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가 큰 차이가 없어서 굳이 도수를 감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소주 같은 경우는 종량세로 전환하게 되면 도수를 감안**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소주를 제외한 이유가 소주 종량세 전환은 정부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소주 종량세 전환을 하게 되면 위스키도 전환해야 됩니다.** 그 말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소주의 세금을 위스키만큼 올리거나 위스키의 세금을 소주만큼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의 어느 쪽도…… **소주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감안하면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세율을 올리는 게 맞지만 서민주라는 걸 감안하면 올릴 수가 없고요.**

윤후덕 위원(더불어민주당)



국산주류는 이윤·판매관리비를 포함해서 제조장에서 출고한 데다가 세금을 매기는데 수입주류는 수입신고가에다가 세금을 매기고 그 이후에 이윤 및 판매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주류 특히 수입맥주가 시장에서 현격한 경쟁력을 갖추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바로잡자고 시작했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맥주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전체 주류체계를 바꾸기에는 아마 기재부로서도 벅찼던 것이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모든 주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잘 정리해서 한방에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특히 안동소주를 비롯해서 전통주에 대한 조세 당국이나 이 관련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속 시원한 개선안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흔쾌히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



…… 시장상황의 변동이 사실은 우리 맥주업계와 생산을 우리 국내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장점유율이 8%에서 20%로 급격하게 상승해 나가는 국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마련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제안에 동의**하고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던 안동소주라든지 **전통주에 대한 대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에 따라서 적합하게 별도의 대책으로 마련해 내서 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소외감들이 없게끔 잘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광림 위원(자유한국당)



작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 발짝도 지금 되지 않고 오히려 같이 그때 문제가 됐던 소량 수제맥주 그리고 탁주 이것은 진전되고 나머지는, 전통주에 대한 것은 위스키하고 묶어 가지고 지금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도록 하고.

그다음에 백번 양보해도 이렇게 **종량세로 바꾸는 게 정말로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지 이 부분에서 한번 저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된다,** 아니면 마켓 셰어가 60% 넘는 특정 회사에, 한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 회사 판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예가 또 나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가격이 다운된다고 내려 가지고 소비자 이익을 높게 한다고 하더니 바로 가격을 올려 버리고 이 행태는 이것은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유승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저는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안동소주와 같은 **전통주도 우리 주류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세계화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정도로 훌륭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주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권성동 위원(자유한국당)



우선 맥주·탁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무슨 특정 업체의 유불리와 관계없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치 이 개편을 하게 되면 특정 업체가 이익을 보고 그 특정 업체가 먹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개정안을 낼 때 특정 업체를 절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통주를 전통주 나름대로 따로 보호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 맥주 과세체계 개편과 전통주를 같이 엮어서 맥주 때문에 전통주가 덜 팔릴 것이다 이걸 갖고 이 맥주 과세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옆에 계십니다만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이 맥주 개편을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번호 2024116
제 안 자 기획재정위원장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19.11.29.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12.01. 회부

본회의
2019.12.01. 본회의 자동부의(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

제안이유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및 코스닥시장 등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株券)과 달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부대의견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대안반영폐기 법률안(3건)

- [201281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 [2016885]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 [202219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요발언

추경호 위원(자유한국당)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도 거래세를 양도세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거래세를 없앨 수는 없으나 **몇 년의 기간을 두고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 체계로 전면 전환을 시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거래세는 순차적으로 인하·폐지하고 거기에 양도세를 신설해서 세수 부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 가면서 이런 제도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유승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저는 일단은 이중과세라고 하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보고요. 특히 거래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일단은 거래세는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통행료 비슷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지적은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바는 양도 차액으로 인한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 지금 면세 기준액이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법안도 내고 주장을 했던 것은 이것을 1000만 원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개혁특위에서도 계속해서 하나의 개혁안으로, 과제로 던져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래세를 지금 당장에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거래세 폐지와 함께 양도차액으로 인한 금융소득 부분에 대해서 면세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



저도 방향에 있어서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를 전체적으로 낮춰 나가고 양도세 체계를 개편해서 세수의 전체적인 볼륨을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이 빨리 나와서 개편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저도 정부안에 동의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같이 논의하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SAMPLE

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가격 기준에서 수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도록 하며,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탁주의 세율을 1킬로리터당 41,700원으로, 맥주의 세율을 1킬로리터당 830,300원으로 규정하였는데, 각 세율은 최근 2년간(2017~2018년) 평균 탁주와 맥주의 주세액을 평균 출고량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세수중립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정한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는 가격(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출고가격,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체계이며, 주종별로 5%~7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주종별 주세 세율

주종		세율
주정		주정 1㎘ 당 57,000 원
발효주류	탁주	5%
	약주·과실주·청주	30%
	맥주	72%
증류주류		72%
기타주류	기타 발효주류	30%
	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주류	10%
	맥주	72%

(출처: 국회사무처)

- 특히 **맥주**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세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으며, 이에 맥주에 대한 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주세법 개정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2018. 11.)이 발의되었음.
- 권성동의원안은 2018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당시 기획재정부가 주세의 종량세 전환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맥주 외에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종량세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량세 전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6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출한 것임.

쟁점1.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제로 전환

현 행	개정안
■ 과세표준(「주세법」 제21조) ○ 주정: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 ○ 주정 외의 주류: 주류 제조장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가격 기준에서 수량 기준으로 변경 ○ 주정, 탁주 및 맥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 ○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 주류 제조장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
■ 세율(「주세법」 제22조) ○ 탁주: 5% ○ 맥주: 72%	■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수량당 일정 금액 기준으로 변경 ○ 탁주: 1킬로리터당 41,700원 ○ 맥주: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664,200원
○ 〈신 설〉	○ 탁주와 맥주의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함

SAMPLE

현 행	개정안
■ 과세표준과 세율(「교육세법」 제5조) ○ 과세표준: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세율: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 「주세법」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 과세표준: (현행과 같음) ○ 세율: 10%. 다만, 다음 주류에 대해서는 30% - 맥주 - 증류주류 -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의 주류(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

(출처: 국회사무처)

① 타당성

-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세부담의 불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던바, 일부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으로써 국산/수입주류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맥주의 경우 7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세부담의 차이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어 맥주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국산·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 비교

구분	국산주류	수입주류
과세표준	제조장 출고가격 (이윤, 판매관리비 포함)	수입신고가격 (국내에서의 이윤, 판매관리비 제외)
주 세	과세표준의 72%	
교육세	주세액의 30% = 과세표준의 21.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주세액 + 교육세액)의 10% = 과세표준의 19.36%	
총 세부담	과세표준의 112.96%	

-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주류의 고급화·다양화가 촉진됨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이 커질 것으로 기대됨. 가격에는 주류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종가세 체계에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세부담도 커지므로 주류업체가 제품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임.
- 주류의 소비(음주)는 소비자의 건강 악화, 음주운전이나 만취로 인한 사고, 폭력과 가정불화 등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데, 종량세는 주류의 양 또는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도수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구세(Pigouvian tax)로서 과도한 주류 소비를 억제하여 외부불경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일반적으로 종량세는 종가세에 비해 세부담의 역진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탁주와 맥주는 제품별 가격 편차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역진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 문제점

- 개정안은 생맥주에 대한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맥주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감면율이 약 37%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 종가세 체계에서는 포장용기비용 등 제조단가가 높은 제품일수록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세부담도 증가하는바, 현재 생맥주는 대용량 케그를 사용하므로 비교적 세부담이 낮고(리터당 519원), 캔맥주는 용량이 작은데다 캔의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세부담이 높은 상황임(리터당 1,121원). 맥주에 대한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제조단가와 상관없이 세액이 결정되므로 상대적으로 제조단가가 낮은 생맥주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반대로 캔맥주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남.

용기별 ℓ당 주세 및 총 세부담(2018년 국내 3社 기준, 잠정치)

구분			ℓ당 주세(원)				ℓ당 총 세부담(원)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용기		비중(%)	현행	개정	증감	증가율(%)	현행	개정	증감	증가율(%)
국내 3社 기준	병	41.1	814	830	16	2.0	1,277	1,300	23	1.8
	캔	27.0	1,121		△291	△26.0	1,758	1,343	△415	△23.6
	페트	16.2	803		27	3.4	1,260	1,299	39	3.1
	생맥주	15.7	519		311	59.9	815	1,260	445	54.6

(출처: 기획재정부)

- 개정안은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이 물가에 연동하여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고 있는데,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에 비해 탁주와 맥주의 세율이 더 빠르게 인상됨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한국주류수입협회)
- 희석식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는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주류 가격을 동결하여 세부담을 유지할 수 있으나, 탁주와 맥주는 선택의 여지없이 자동으로 세율이 인상된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신 설〉 1의2. ~ 10. (생 략)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 10. (현행과 같음)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 ———————————————— ———— . ————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2절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 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감염병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 · 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 · 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주류업단체 〈삭 제〉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 ———————— ———————— .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 ———————— .
제22조(세율) ① (생 략)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제22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SAMP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맥주: 100분의 72	라.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3. ————. 가. ———— . —— 별표 제4호다목 ———— .
나. (생 략) 〈신 설〉	나. (현행과 같음) ③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 제2항 또는 제3항에 ———— .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청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면허의 취소	〈삭 제〉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 제7조 및 제8조제1항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SAMPLE

용어 해설

제안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청문회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SAMPLE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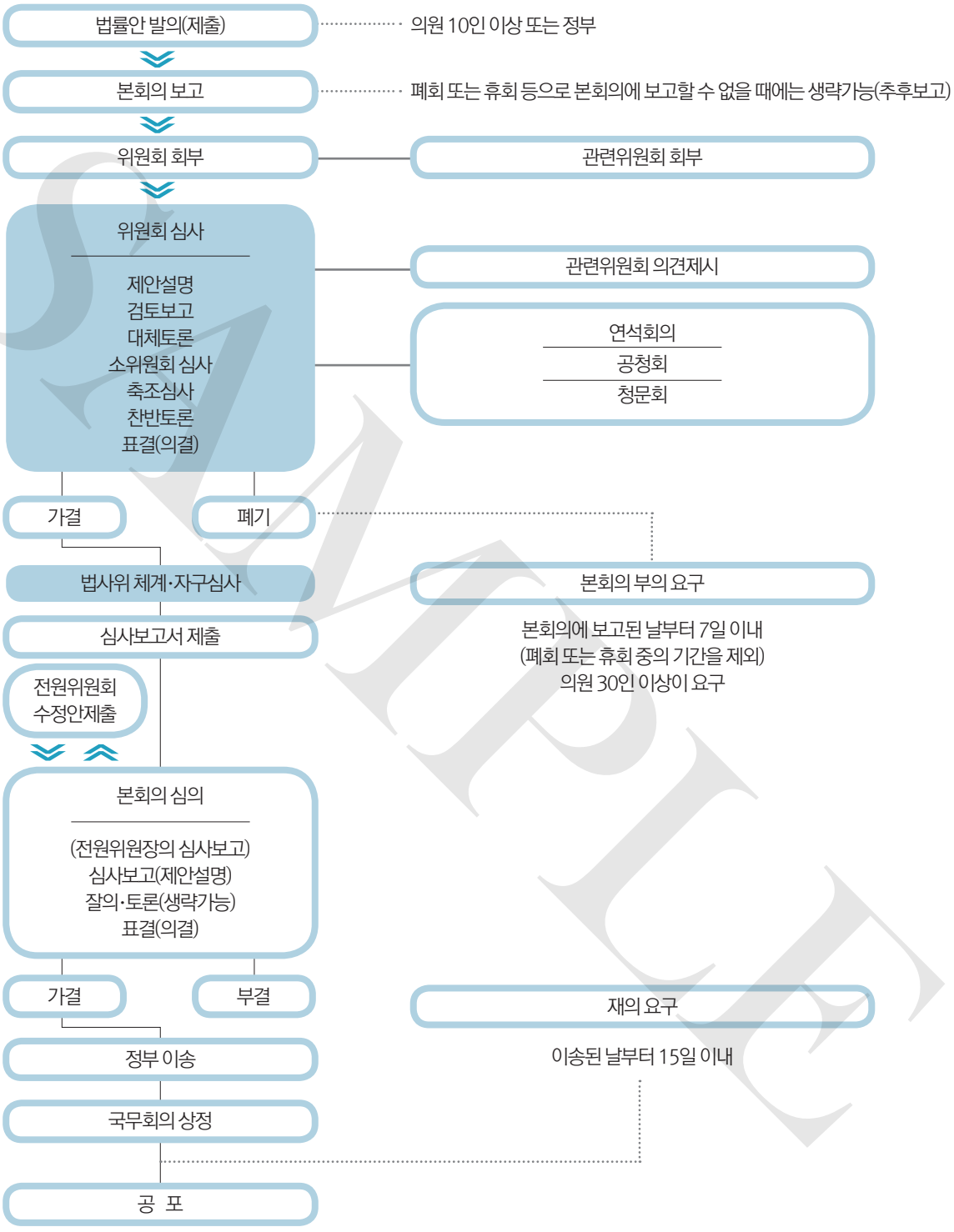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SAMPLE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SAMPLE

SAMPLE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7, 8, 10-13, 15, 16층)

www.draju.com